

참고문헌

- Augé, Marc. 1998. *Les Formes de l'Oublie*. Paris : Edition Payot et Rivages.
- Arizpe, Lourdes. 2001. *Cultural Heritage and Globalization*. Los Angeles: Getty Foundation.
- Arizpe, Lourdes. 2006. "The Intellectual History of Culture and Development Institutions"; in: Walton, Robert and Vijendra Rao (Eds.) 2009. *Culture and Public Action*. Palo Alto:Stanford University Press.
- Arizpe, Lourdes. 2011. *Compartir el patrimonio cultural Inmaterial: narrativas y representaciones*. México: Consejo Nacional para la Cultura y las Artes and Crim-Unam.
- Amescua. 2013. "Anthropological Perspectives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pringer Briefs in Environment, Security, Development and Peace, vol. 6 (Heidelberg – Dordrecht – London – New York: Springer-Verlag, 2013).
- Arizpe, Lourdes. "Culture, Diversity and Heritage: Major Studies." *Springer Briefs on Pioneers in Science and Practice No. 11*. Subseries Texts and Protocols No. 6 (Heidelberg – New York – Dordrecht – London: Springer-Verlag). In press.
- Balandier, Georges. 2001. *Le Grand Système*. Paris : Librairie Arthème Fayard.
- Bortolotto, Chiara. 2010. "Il patrimonio immateriale e l'autenticità: una relazione indissolubile" in *La Rivista Folklorica*, no.1.
- Malouf, Amin. 2006. *Les Identites Meurtrieres*.
- Geertz, Clifford. 1973.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New York:Basic Books.
- Khaznadar, Chérif. 2009. "Les Dangers qui guettent la Convention de 2003" dans *Le Patrimoine Culturel Immatériel à la Lumière de l'Extrême Orient*. Paris : Maison des Cultures du Monde. 13-46.
- Lévi-Strauss, Claude. 2011. *L'Anthropologie face au Problèmes du Monde Moderne*. Paris : Editions du Seuil.
- UNESCO. 2001. Final Report. International Round Table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Working Definitions".
- UNESCO. 2002. Draft Report "Terminology and intangible heritage. Drafting of a glossary." Report draft submitted to participants. UNESCO. 2001. Final Report. International Round Table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Working Definitions".

무형유산은 왜 보호되어야 하는가?

이삼열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

2003년 무형유산보호협약의 성공

무형유산보호협약이 채택된 지 올해로 10년이 되었다. 2003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협약은 많은 국가가 무형유산 보호에 호응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이 협약은 채택 후 3년 만인 2006년에 루마니아가 협약을 비준, 서른 번째 협약 당사국이 됨으로써 발효되었다. 협약 발효 후 2008년까지는 협약 이행을 위한 준비 작업이 이루어졌다. 정부간위원회가 조직되고, 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 지침이 마련되었다.

2009년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제4차 정부간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대표목록 및 긴급보호목록에 등재될 유산이 발표되었다. 당시 기준으로 이미 협약 당사국 수가 116개국에 달했으며, 2013년에는 153개국을 넘어섰다. 유네스코 사상 이 협약 만큼 회원국들이 발 빠르게 참여하고 적극 참여해 비준한 협약은 일찍이 없었다.

이러한 성과는 당사국들의 협약 이행 과정 및 속도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각국은 대표목록에 자국의 유산을 등재하고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지금까지 등재된 유산은 약 300종목에 이른다. 현재 88개 당사국이 대표목록 257종목, 긴급보호목록 31종목, 보호모범사례 10건을 등재했다.

이 협약은 또한 당사국 문화유산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많은 국가가 협약을 바탕으로 법을 제정하거나 기존의 문화유산 관련법을 개정했다. 이는 전통으로 보전 및 전승되어 온 관습, 표상, 표현, 지식, 기술 일체를 무형유산의 범주에 포함시켜 그 개념을 확장시키면서 협약 이행 및 유산 보호의 책임이 있는 당사국들이 이 협약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요구 사항을 수용하기 위해 관련법과 조직을 정비해야 했다.

대부분의 경우 노래, 춤, 악기, 수공예 기술 보유자를 지원하는 법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었지만 예술작품이나 행위 또는 축제 보호법은 거의 전무했다. 특히 구전 전통과 표현물, 전통 지식과 기술 및 사회 관습들을 포괄해서 보호하는 법과 제도를 갖춘 국가는 소수에 불과했다. 따라서 모든 협약 당사국은 협약에 규정된 목록작성, 기록화, 증진, 전승 활동을 통한 유산 보호라는 새로운 틀과 체계에 따라 자국의 관련 법제를 개정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무형유산보호협약은 문화유산 분야에서 표준을 만드는 유네스코의 역할을 충족했을 뿐만 아니라 무형유산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국제법 관련 도구 마련도 성공시켰다.

무형유산이라는 용어는 마치 복음이 전파되듯 기쁜 소식으로 대중매체와 일상 대화 속에서 빠르게 퍼져 나가면서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 협약과 협약에 제시된 보호제도는 전통문화의 중요성 및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협약 당사국들은 대표목록 및 긴급보호목록 등재를 위해 국가목록을 마련하고 협약과 운영지침에 따라 다섯 개 영역으로 나눠 현존하거나 사라져 가는 유산 종목을 대상으로 목록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2009년부터 아시아·태평양 지역 당사국을 대상으로 무형유산 보호 현황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국가들이 최근에 들어서야 목록작성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록에 기록된 유산은 보통 공예품이나 공연예술로 한정되어 있었다. 구전 전통, 사회 관습, 전통 지식과 기술은 배제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목록화 단계에서는 “영역을 불문하고 기존의 모든 무형유산 종목을 목록에 포함해야 하는가?”, “중요도와 가치가 높은 종목만 보호하고 증진에 힘써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주요 무형유산을 대상으로 목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보호나 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유산 종목은 어떤 것인가?”, “해당 종목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부 국가에서는 무형유산을 가리켜 비물질 유산, 정신 유산, 지적 유산 등으로 부른다. 한국에서는 형태를 규정할 수 없다는 뜻으로 ‘무형유산’이라고 한다. 일본 역시 같은 표현을 쓴다. 이처럼 무형유산은 가시의 실체를 지닌 존재가 아니기 때

문에 고정된 형태를 취할 수 없다. 또한 모습과 내용이 항상 변하기 때문에 진화하는 특성이 있으며, 사회·역사의 맥락에 따라 변모한다.

젊은 세대들은 전통문화의 가치를 고마워하거나 소중하다는 등 긍정의 시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 때로는 전통과 관습을 혁신과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물로 취급한다. 이러한 부정 인식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도 협약 비준을 망설이고 있다.

바로 여기서 중요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무형유산 각 종목이 보유하고 있는 진정한 가치와 혜택은 무엇이며, 이러한 무형유산을 보호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맞는 대답을 안다면 보호 및 증진 활동의 이유와 목적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무형유산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

전통문화의 가치를 평가하고 문화유산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을 가늠하고자 할 때 우리는 곧 전통문화 본질의 특성은 무엇인지, 어떤 문화유산이 매우 복잡한 다원 문화를 구성하는 주요소인지 파악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1982년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세계문화정책회의(몬디아컬트)에서는 넓은 의미의 문화 개념을 이렇게 정의했다. “문화란 사회와 사회집단을 특징짓는 고유한 정신·물질·지식·정서 특성의 총체이자 문예뿐만 아니라 삶의 양식, 인간의 기본권, 가치관, 전통, 종교도 포함한다.”

문화는 복잡다단하고 긴밀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개별 문화유산을 분석해 가치 판단을 내릴 경우 전통문화와 사회 총체의 본질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사회와 공동체의 무형유산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 접근과 맥락에 따른 해석이 필요하다.

이뿐만 아니라 무형유산과 유형유산은 동전의 양면처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둘을 별개로 파악하여 평가할 수 없다.

협약은 무형유산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에 관해 몇 가지 해답을 제시했으며, 무형유산의 가시성과 생명력을 보장해야 하는 이유도 아울러 제시했다.

협약에 언급된 내용이지만 좀 더 심도 있는 논리에 부합하는 담론을 바탕으로 해석하고, 실천·역사성의 사례를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는 세 가지 사항을 강조하고자 한다.

1. 협약은 공동체와 집단에 정체성과 연속성을 부여하는 것이 무형유산의 정신이자 기능이라고 명시한다. 어느 누구도 언어, 음식, 사회관습, 종교 등 무형유산으로 국가, 공동체, 민족의 정체성이 확보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식민 통치를 받은 국가들은 전통 문화유산이 억압되거나 말살되어 국가 정체성을 잃고 식민지배 세력의 새로운 문화를 강제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오랜 세월 식민 지배를 받은 일부 아시아 및 아프리카 국가들은 전통 언어, 음식, 관습을 완전히 잃었다. 외세 통치 기간이 아무리 짧더라도 전통 유산이 손상을 입고 왜곡되었다. 그러나 제국주의 열강으로부터 독립과 해방을 쟁취한 후 국가 정체성 강화 수단으로 잃었거나 손상된 전통문화를 회복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는 옛 소련의 지배 아래 있던 중앙아시아와 동유럽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세계화의 바람이 날로 거세지는 오늘날에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기술자와 노동자의 대규모 이동으로 다문화 사회가 되어 가고 있다. 모국을 떠나 실향민으로 외국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들은 국적을 바꾸기는 하지만 문화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한다. 문화는 그들의 존재를 구성하는 본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형유산의 보호는 개인이 어디에 있든 간에 항상 국가, 공동체, 민족 정체성 및 연속성 확보에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2. 협약은 무형유산의 또 다른 효과인 인간의 창의성 증진에 관해 언급한다. 무형유산은 문화의 다양성 및 인간의 창의성을 추구하는 공동체와 개인에 의해 유지되거나 항시 재창출된다. 따라서 무형유산은 인간의 창의성 발달 원천이 된다. 1970년대 발전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개도국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내생 발전’ 개념을 도입했다. 내생 발전 모델은 외생 발전 모델보다 더 효과가 있고 지속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도국 내부의 문화 요인이 외부 원조나 외국에서 도입한 기술보다 발전에 더 크게 기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유한 국가들은 인간 발달에서 질 수준 향상에 성공을 거두었다. 그들의 문화가 창의성 발달에 필요한 자원과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오래 전부터 한국의 문자 체계인 한글이 정보기술 발전, 컴퓨터 및 스마트폰 보급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했다. 문화와 발전의 상관관계는 ‘세계문화발전 10년(1988~1997)’ 기간에 유네스코가 주최한 세계문화발전위원회(World Commission on Culture and Development)의 집중 토론에서 이미 강조했다. 세계문화발전 10년 실행계획은 개발 과정에서 문화를 폭넓게 고려하도록 장려하고 경제, 사회, 과학, 기술 발전과 연관된 창의 태도와 활동을 독려했다. ‘우리의 창의적 다양성(Our Creative Diversity)’은 세계

문화발전위원회가 1995년에 발간한 보고서 제목이다. 이 보고서는 발전과 관련 지어 문화를 분석하기 위한 주요 항목을 제시하면서 다문화 사회가 융합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창의성을 촉진하는 새로운 방식도 제시했다. 그러나 무형유산이 창의력 발전에 기여하는 방식을 구체화해서 제시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연구 기반이 필요하며, 여러 나라의 역사 경험으로부터 본받을 만한 모범 사례를 찾아내어야 한다.

3. 협약은 어떤 종류의 무형유산에 목적과 관심이 있는지 밝히고 있다. 협약 제2조는 ‘이 협약의 목적상 공동체·집단·개인들 간의 상호 존중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현존하는 국제인권규약에 부합하는 무형유산만이 고려될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 말은 협약이 모든 유형의 무형유산 종목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인권, 평화 공존, 지속 가능한 발전 원칙과 양립 가능한 무형유산의 요소 보호에 주로 관심을 기울인다는 뜻이다. 협약 제2조의 문구는 협약의 주목적이 이러한 가치와 목표에 부합하는 무형유산의 가치성과 생명력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있음을 보여 준다. 인권, 평화, 지속 가능한 발전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포괄 개념은 인권과 평화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포함하고 있다. 인권과 평화의 보장 없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근간이 되는 세 개의 축인 사회통합, 경제성장, 환경보호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문제는 무형유산의 보호가 지속 가능한 발전에 어느 정도로 기여할 수 있느냐다. 그런데 수없이 많은 경험 및 사례가 현재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전통 문화, 지식, 기술, 관습, 가치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무형유산 속에 스며 있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전통사회의 가치관은 토지 황폐화, 물 부족, 숲·강·바다 등 환경 보호 및 관리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 해결에 기여해 왔다. 또한 토착지식과 전통관습은 생태계 위기,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등 현재의 중요한 문제 해결에 필요한 통찰력을 제공하기도 한다. 우리 센터에서는 바누아투문화센터(Vanuatu Cultural Centre)가 수행한 현장조사 보고서를 출간했다. 바누아투에서 진행된 현장연구 프로젝트는 약 30년 전에 시작되었으며, 문화유산 관리에 공동체 참여를 본격화한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자원한 현장 요원들을 지역 공동체로 파견하여 전통문화유산의 전승과 보호에 중요한 의식, 관습, 토착지식을 기록하도록 했다.

다음은 필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바누아투 현장조사 보고서의 발췌 내용이다. 전통지식의 현 시대 사용과 현대사회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실제 사례로 대중에게

게 널리 알려야 한다. 예를 들어 어류와 갑각류의 산란 이동로, 은신처, 월주기와 같은 전통지식은 자원 관리에 매우 중요하다. 환경, 자원관리, 개발 분야 종사자들은 전통지식이 현대사회에서 지니는 가치와 그 적용 가능성을 이해하고 서구의 과학 지식이 태평양의 전통 지식보다 우월하다는 잘못된 관념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침술·지압·약초학 및 몇 가지 과일과 손을 사용한 치유법 등 전통의학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실행되고 있으며, 점점 그 효과를 인정받고 있는 추세다. 모잠비크에서는 모기에 물리면 양파를 바르는 민간요법이 있다. 카메룬에서는 복통이 일어날 경우 비터콜라(bitter kola)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 스스로 치료한다. 이처럼 병을 고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전통 민간요법은 수백 가지에 이른다.

이와 관련하여 협약은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무형문화유산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협약 채택 결의문). ‘협약 이행 운영지침’은 지속 가능한 발전 수단으로서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 인식 제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협약 이행의 우선 과제

무형유산의 보호는 단기간에 끝낼 수 없는, 장기간 지속해야 하는 엄청난 규모의 과업이다.

협약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무형유산의 개념은 매우 광범위하여 공동체·집단·개인이 문화유산의 일부로 인지하는 관습, 표상, 표현, 지식, 기술을 모두 포괄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형유산을 보호한다고 할 때 그 많은 유산 가운데 어떤 분야의 어느 종목을 우선 보호해야 하느냐는 어렵고 복잡한 질문에 직면하게 된다.

협약은 당사국으로 하여금 다섯 개의 범주 내에서 무형유산을 지정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그 밖에 기록화, 보호, 증진, 전승, 재활성화 등 무형유산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형유산을 유효하게 보호하고 대중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협약은 목록 체계를 만들고 각 당사국이 대표목록, 긴급보호목록, 모범보호사례에 등재 신청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이 제도는 무형유산의 가시성과 활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협약에 의해 마련된 세 개의 목록 가운데 대표목록에 유산을 등재하려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긴급보호목록에 유산을 등재한 국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현재 두 목록 간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상태다.

협약은 긴급보호목록 등재 유산에 대한 원조 조치를 명시하고 있으나 많은 국

가가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거나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무형유산 종목 신청에 망설이고 있다. 긴급보호목록에 등재될 경우 국가의 위신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잘못된 통념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대표목록 등재 활동은 활발하게 수행하면서 사라지거나 훼손될 위기에 처한 무형유산을 보호하는 긴급한 임무를 등한시하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다.

‘긴급한 보호’라는 용어가 낮은 위상과 소외감을 야기하기 때문에 기피하는 것이라면 목록명을 ‘우선순위 보호목록(Priority Safeguarding List)’으로 바꾸면서라도 위험에 처한 중요한 무형유산 보호라는 협약의 주된 목적을 달성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치·행정상 의사 결정에 앞서 공동체의 전통 보유자들은 물론 우선순위 과제와 우선 보호해야 할 유산 종목을 결정하는 전문가의 의견과 목소리를 존중하고 반영해야 한다. 한 나라의 정체성, 창의성, 지속 가능한 발전의 원천이 되는 무형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분야와 종목의 무형유산 보호에 에너지와 노력을 투입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국가별 정책과 전략의 몫이다.

유네스코로부터 정보와 네트워킹이라는 특화된 임무를 부여받은 유네스코아태 무형유산센터는 2009년부터 아태지역 무형유산 국가별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다섯 개 소지역 24개국으로부터 현황조사 보고서를 받았다.

일반 보호체계, 정책, 다양한 유형의 목록 이외에도 현황 보고서는 무형유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주요 기관 및 공동체의 참여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 보고서를 제출한 국가 가운데에는 아직 2003년 협약을 정식으로 비준하지 않은 국가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이들 현황 보고서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겠지만 국가와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창의력 발전을 위해 각국의 현안과 긴급한 보호 업무가 무엇인지 읽어 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피지, 파푸아뉴기니, 쿡 제도, 통가, 팔라우, 바누아투 등 태평양 도서국들에서는 항해, 항해술, 건설, 돛자리 짜기 등의 전통 지식이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문화유산이다. 이러한 지식이 지속 연행될 수 있도록 전승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특히 별들의 위치나 기상, 해상 조건과 관련된 지식을 이용하는 전통 항해술이 영원히 사라지게 될 위험에 처해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보유자와 관련 지식재산권이 보호를 받아야 하고, 보유자의 지식과 기술이 후대에 전승되어야 한다.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몽골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역사 배경과 지리 환경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 시기는 각각 다르지만 모두 옛 소련 소속 공산주의 국가였다. 이들 국가는 유목 생활을 중심으로 한 전

통문화를 공유하고 있어서 문화 유사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현재 이들 국가는 사라질 위기에 처한 서사 음악과 구전 전통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앙아시아 소지역 회의가 개최되었다. 여러 차례 개최된 회의는 공통 요인과, 문제점, 장점 등을 공유하는 등 지역 대표들이 무형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의견을 나누고 서로의 경험을 배울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되었다.

30~50개의 토착 민족이 살고 있는 동남아시아의 경우 소수민족 공동체의 정체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무형유산의 보호라는 공통 과제를 긴급히 수행해야 한다.

10년간의 협약 이행 결과 무형유산 보호 의지와 인식이 놀랄 만큼 향상되었으며, 국가 및 공동체 참여와 국제 협력 기반이 확고하게 다져졌다. 그러나 무형유산의 보호와 활성화에서 진정한 의미의 실제 성과를 거두려면 당사국들이 우선순위 과제를 구체화한 국가 전략과 정책을 마련하고 협약 이행 의지를 끝까지 관철시켜야 한다.

이번 ‘2003년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10주년 기념회의’를 통해 앞으로 함께 실천해야 할 공동의 과제를 살펴보고, 향후 10년 동안에 이러한 비전과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과 강한 연대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제3장

유네스코 무형유산 목록의 결과는 무엇인가?
